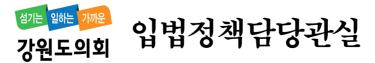
입 법 정 보

- ◆ 법률 제정·개정 주요사항 및 타 시·도 조례 입법동향,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 등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 법령 입법예고 사항은 <u>법제처(입법예고)</u>, <u>국민참여입법센터</u>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법제처(입법예고):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List.mo?mid=a10104010000
 - 국민참여입법센터 :_http://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isOgYn=Y



목 차

│. 법령 제정ㆍ개정 동향	1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1
2. 소방시설공사업법(개정)	5
3. 지방재정법(개정)	8
4.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	10
5. 유아교육법(개정)	11
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13
7. 초・중등교육법(개정)	15
8. 해양환경관리법(개정)	17
Ⅱ. 다른 시ㆍ도 조례 입법동향	20
. 다른 시·도 조례 입법동향 1.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20
1.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20 21
1.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	202122
1.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	20212223

Ⅰ 법령 제정·개정 동향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20.3.4.시행 20.9.5.]

소관부서 :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044-202-2505



■ 개정이유

O 최근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대처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염병 대비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감염병의 예방 및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감염병위기 시 대국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의정보공개 범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감염병으로 인한국가위기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권한을 강화하고, 역학조사관 규모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유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7조제2항제2호의2 신설).
- 나. <u>제1급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한</u> 사실을 보고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그 사람에 대하여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3조 제2항 및 제80조제2호의2 신설).

-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등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을 평가·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제16조의2 신설).
- 라. <u>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u> 실태를 조사하면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제17조).
- 마. 고위험병원체의 분리·이동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함(제21조제4항, 제22조제3항 후단, 제23조제6항, 제52조제2항 및 제53조제2항 신설).
-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국민에게공개하도록 하고,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제34조의2).
- 사.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운영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제36조제1항 및 제67조 제6호의3 신설).
-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외품·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상승이나 공급부족으로 국민건강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정기간 동안 그 의약외품·의약품 등의

수출이나 국외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제40조의3 및 제77조제3호 신설).

- 자.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심자에 대하여 격리·조사·진찰·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함(제42조제2항·제3항 및 제79조의3 신설).
- 차.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제49조의2 신설).
- 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하도록 함(제51조제1항 후단 신설).
- 타. <u>감염병 예방·방역·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u> <u>구청장이 방역관·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u>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두는 역학조사관의 수를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확대함(제60조제1항 및 제60조의2제1항).
- 파.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환자 등의 위치정보를 경찰관서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보건의료기관에 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의료인, 약사 등은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경우 환자 등의 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를

확인하도록 함(제76조의2).

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제76조의4 신설).

소방시설공시업법

2

[개정 `20. 6. 9. 시행 `20. 9. 10.]

소관부서 :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07

□ 개정이유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종전에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대여 행위만을 금지하였으나 앞으로는 무등록업체에 성명이나 상호를 대여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을 하는 행위도 금지하며, 소방시설의 설계 및 감리의 하도급을 제한하여 전문 기술능력을 갖춘 업체에서 업무수행을 하게 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변경신고 및 소방시설공사 공사감리자 지정신고·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 (안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안 제13조제3항· 제4항 및 제17조제4항·제5항 신설).
- 나. 소방시설업자로 하여금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 등을 명할수 있으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37조제1호).

- 다. 공사감리자 지정대상이 아닌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공사업자는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완공검사 또는 부분완공검사를 신청하는 서류나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음 (안 제9조제1항제13호 및 제13조제2항).
- 라. 시·도지사는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의 방법을 위반한 경우, 방염처리업자가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및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음 (안 제9조제1항제14호의2, 제20호의3 및 제24호의2 신설).
- 마.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받은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의 시공뿐 아니라 소방시설의 설계나 감리도 하도급하거나 재하도급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9조제1항제21호, 제22조제1항 및 제36조제6호, 안 제9조제1항제21호의2, 제22조제2항 및 제36조제6호의2 신설).
- 바.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함(안 제10조제1항).
- 사. 종전에는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경우나

공법이 특수한 시공에 대해서는 설계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게 하였으나, 감리 기술의 발전, 감리 인력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모든 설계·시공에 대해서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게 함(현행 제17조제1항 단서 삭제).

- 아.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전문 소방시설업자가 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안 제21조제2항 신설).
- 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0조제1항제13호의3 신설).

지방재정법

3

[개정 `20. 6. 9. 및 시행 `20. 9. 10.]

소관부서 :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044-205-3707

□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가와 달리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의 이전을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일부 특별회계나 기금에서는 여유재원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재원이 부족하여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 규정이 불명확하여 예비비를 제한 없이 편성함으로써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또한, 「국가재정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예산 전용 금지 사유나이체·이용·전용에 대한 사후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근거, 특별회계 예비비계상 한도를 명확히 규정하여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예산의 전용 금지 사유를 명시하고 예산의 이체 및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제9조의2 신설).
- 나. 이 법에 따른 재정안정화기금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을 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기 위하여 재정안정화기금은 폐지함(현행 제14조 삭제).
- 다. 특별회계 예비비 계상 한도를 명확히 규정함(제43조제1항).
- 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의 이용·이체를 분리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예산의 이체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제47조, 안 제47조의2 신설).
- 마. <u>예산의 전용 금지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예산의 전용 내역을</u>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제4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20. 3. 24. 및 시행 `20. 9. 25.]

소관부서 : 산림청(산림환경보호과), 042-481-1831, 4248



○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정원에 대해서는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바, 정원 조성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u>국가</u>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이교육법

5

[개정 `20. 3. 24 및 시행 `20. 9. 25.]

소관부서 : 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 044-203-655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유아교육 정책이 학생 수 등에 대한 전망과 예측에 근거하여 보다 정확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로 수집된 자료와 「통계법」에 따른 통계, 행정자료 등을 활용하여 교육 관련 지표 및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이하 이 조에서 "교육통계조사"라 한다)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에게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 등의 자료 제출을"을 "교육통계조사와 제2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교육통계조사의"를 "교육통계조사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의"로, "조사업무"를 "업무"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를 <u>"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u> <u>「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로 한다.</u>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6

[개정 `19. 8. 27. 시행 `20. 9. 25]

소관부서 : 중소벤처기업부(정책총괄과), 042-481-4548

□ 개정이유

○ 자격증을 대여·알선 등을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등록증을 대여·알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회·경제적 구조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목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중소기업진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2조의23(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관할행정구역 내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 지정 기간 및 지원내용을 결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2조의24(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2조의23제2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소관별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시행과 지역별 중소기업 경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 추진에 있어 중소기업특별지원 지역에 있는 지방중소기업의 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초 · 중등교육법

7

[개정 20.3.24. 및 시행 20.9.25.]

소관부서:교육부(학교혁신정책과)044-203-6450 044-205-412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초·중등교육 정책이 학생 수 등에 대한 전망과 예측에 근거하여 보다 정확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로 수집된 자료와 「통계법」에 따른 통계, 행정자료 등을 활용하여 교육 관련 지표 및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2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교육통계조사의"를 "교육통계조사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의"로, "조사업무"를 "업무"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공공기관 등"을 "공공기관의 장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에"를 "제5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대상"을 "교육통계조사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의 대상"으로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와 제2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

8

[개정 20. 3. 24. 및 시행 20. 9. 25.]

소관부서 : 해양수산부(총괄, 법령개정사항-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9

■ 개정이유

○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관리 강화 및 선박연료유 사용량 등에 대한 보고제도 신설 등 「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의 자격요건 강화, 해양오염방제업자의 의무 규정 및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 신설 등 해양오염사고 방지 및 사고발생 시 신속한 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선박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리·해체 중인 선박에서의 오염물질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선박의 연료유 견본 보관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해양환경관리업자의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방지 ·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또는 해양환경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으로 임명·채용된 후 일정기간 마다 교육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련 교육 이수 등의 자격을 갖춘 후에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또는 기술요원으로 임명·채용되도록 함(제32조, 제36조, 제70조 및 제121조).
- 나. 선박의 수리·해체 과정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조선소 또는

수리조선소에서 수리 중이거나 해체 중인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거 · 처리할 수 있도록 함(제37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 다.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비치대상 선박 중 총톤수 5천톤 이상 선박의 소유자는 해당 선박에너지효율관리 계획서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며, 선박연료유의 사용량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도록 함 (제41조의3제2항 부터 제4항까지 및 제41조의4 신설).
- 라. 국제협약의 개정으로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이 강화(현행 3.5%에서 2020년부터 0.5%)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여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사용하여 황산화물 배출량을 감축하는 경우에는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외사유를 마련하는 한편, 부적합한 연료유를 선박에 적재하는 것을 금지함(제44조, 제44조의2 신설).
- 마. 선박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 등 연료유의 교체주기가 짧은 선박의 경우에는 연료유 견본의 보관기간을 종전 1년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함(제45조제4항).
- 바.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의 예외사유에 강화된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예비검사 등을 위해 해당 설비를 시운전하는 경우를 추가함(제48조제4호 신설).
- 사. 해양경찰청장이 지역의 자율적인 해양오염방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촌계에 소속된 어업인 등으로 해양자율방제대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68조의2 신설).
- 아.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방제를 위하여 해양오염방제업자는 방제

의무자 등이 방제조치를 하는 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고의로 오염 물질 방제업무를 지연하거나 방제조치를 방해해서는 아니 됨 (제72조제4항 신설).

- 자.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폐기물위탁·처리 및 선박해체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당 신고가 수리 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제76조제2항 신설, 제111조제2항).
- 차. 폐기물위탁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등이 종전의 폐기물위탁자의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함(제76 조제5항 신설).
- 카.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에 「전원개발촉진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해상풍력 발전소, 「전기사업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전기설비 중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행위를 추가함 (제85조제1항제8호의2 신설).

제12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③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Ⅱ 다른 시·도 조례 입법동향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정 및 시행 `20.08.06.]



■ 제정이유

○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 등에게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가치관 등을 가지게 하고,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 방·해결하기 위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학교환경교육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등 울산광역시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학교환경교육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 라.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거나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환경교육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 마. 학교환경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함(안 제6조~제10조)
- 바.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2

울산광역시 북방경제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시행 `20.08.06.]



■ 제정이유

○ 북방경제협력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방경제협력 대상국가와의 연계 강화, 통일의 기반구축 및 울산광역시 미래 성장 동력의 창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가. 북방경제협력 정책 추진 사항(안 제3조)
- 나. 북방경제협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북방경제 협력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 다. 북방경제협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북방경제협력 관련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의 상설사무국 유치 및 설치(안 제13조)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시행 20.08.07.]



■ 제정이유

3

○ 일본은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내용이 포함된 교과서를 검정에 통과시키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경기도 차원에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일본의 독도 도발에 적극 대응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가. 독도교육 지원에 필요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독도교육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독도교육에 필요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독도교육 지원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마. 독도교육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바. 사무의 위탁 및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경상남도 안전체험관 운영 조례

[제정 및 시행 `20.08.13.]



□ 제정이유

○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대응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경상남도 안전체험관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 가. 목적, 체험관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나. 인력배치, 안전체험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제4조)
- 다. 개관·휴관일과 이용료 이용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5~제7조)
 - 휴관일 : 1월1일, 설날 추석 당일, 공휴일의 다음날 이용료 : 무료
- 라. 이용·행위 제한과 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제10조)
- 마. 보험가입,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제12조)
- 바. 편의시설 설치, 문화 여가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13~제14조)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 (법제처)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 관련)

[의견20-0140, 경상남도 사천시]

🔲 질의요지

○ <u>「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u>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및 이유

)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화장실법"이라 함)에서는 공중화장실(각주: 공중(公策)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함(공중화장실법 제2조제1호 참조)) 설치를 명할 수 있는 자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고 있고(제6조), 이동화장실(각주: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함(공중화장실법 제2조제3호 참조))의 설치 명령(제10조), 유료화장실(각주: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함(공중화장실법 제2조제5호 참조)) 표지 부착 신고 수리(제 11조), 공중화장실등(각주: 공중화장실법 제3조 참조),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하며(공중화장실법 제3조 참조), 이하 같음) 개선명령(제 13조), 공중화장실등 설치·관리자에 대한 보고 자료 제출 요구(제19조) 등의

권한자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방법(제10조 및 제10조의2), 유료화장실의 신고요건 및 절차(제11조), 공중화장실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1의2호가목4)는 환경위생 증진 등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사업실시를, 같은 별표 차목16)은 공중변소의 설치·유지 관리를 시·군·자치구의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의 설치·관리에 관한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법률이나 조례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각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호(목적) 참조)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있어서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된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도 원칙적으로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하더라도 상위 법령에 위배할 수는 없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고유권한에 관하여는 조례로 이를 침해할 수 없으며, 나아가 지방의회가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도 그 사무집행에 관한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위반되어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후 57판결 참조)

이와 관련하여 과태료의 부과·정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는 질서위반행위를 조례를 포함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제2조제1호)하면서, 행정청(각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말하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이 과태료를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을 각 호로 명시(제14조)하고 있고, 행정청이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부과하도록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률 또는 조례상 의무위반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여 부과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법 제21조에서는 유료화장실 미신고 설치·운영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제1항), 공중화장실 또는 이동화장실의 설치 명령 위반자, 유료화장실 설치·관리 의무 및 표지 부착의무 위반자, 공중화장실 등 개선명령 미이행자, 보고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제2항), 공중화장실 이용객 중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제3항)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 한다고 규정(제4항)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로 규정하고, 각 항의 상한 범위 내에서 과태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달리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습

니다.

따라서 별도의 위임규정 없이 조례로 공중화장실법 위반행위에 대해 사천시장이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확정적 · 일률적으로 정하여 공중화장실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하는 사천시장이 판단재량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받은 집행기관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중화장실법 제21조제4항의 과태료 부과 방법 및 부과 기준을 확정적 ·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라면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법규인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이며 법률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고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는 점(각주: 헌법재판소 1995. 4. 20. 결정 92헌마 264, 279(병합) 참조)과 과태료 부과· 징수와 관련한 사무는 법률이나 조례에 따른 의무의 효율적 이행을 확보하기위한 수단으로, 과태료를 부과·징수 하는 것이 예산, 인사, 조직 편성과같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고유권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태료 부과·징수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는 수준으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및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 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 6.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 (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법을 적용한다.

- 제6조(공중화장실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장소 또는 시설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공중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0조(이동화장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1조(유료화장실)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유료화장실의 설치·운영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15일 이내에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유료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③ 유료화장실의 신고 요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④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하여는 제7조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및 제8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용하다.
- 제13조(개선명령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제7조·제7조의2의 설치기준이나 제8조의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4조(금지행위)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공중화장실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

- 2. 공중화장실등의 기물(器物)을 훼손하는 행위
- 3. 영리 목적의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 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에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등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제19조(보고 등)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21조(과태료)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6조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2. 제11조제2항에 따른 표지 부착 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위반한 자
- 3. 제13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4. 제19조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③ 제14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 2.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 3. "당사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제14조(과태료의 산정)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질서위반행위의 동기 · 목적 · 방법 · 결과
- 2.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 3.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 · 재산상태 · 환경
- 4. 그 밖에 과태료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2

위탁 운영하고 있는 부천시 행정재산의 이용료 감면 대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4항 등 관련)

[의견20-0152, 경기도 부천시]

■ 질의요지

- O 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u>부천시 행정재산의 이용료 감면 대상에 관하여</u>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지?
 - 나. 조례로 위탁 운영하고 있는 <u>부천시 행정재산의 이용료 감경 대상을</u> 정하면서 "위탁 받은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를 규정할 수 있는지?
 - 다. 조례로 위탁 운영하고 있는 <u>부천시 행정재산의 이용료 감경 대상을</u> 정하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를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O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위탁 운영하고 있는 <u>부천시 행정재산의 이용료 감면</u> 대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조례로 위탁 운영하고 있는 <u>부천시 행정재산의 이용료</u> <u>감경 대상을 정하면서 "위탁 받은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를</u>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 이유

O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경우에는 그 위임 취지를 존중하여 위임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고 규칙 등 하위법규로 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인데,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7조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제1항)이 경우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받아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6항) 같은 법 시행령제21조제4항에서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징수할 이용료는 예상수익을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도록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재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이용료에 관한일반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전문적이고 기술적이거나 수시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 등에는 규칙 등 하위법규로 재위임할 수 있을 것인데, 이 경우에도 그 <u>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 등</u> 핵심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 후 하위법규로 재위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의 이용료와 관련하여 이용료 자체 뿐만 아니라 감면 대상 및 감면 기준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 목적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에서 위탁 운영 중인 행정재산의 이용료 감면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은 정하고, 주변의 여건변화 등으로 인하여 규정을 신속하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규로 위임하여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처럼 <u>부천시에서 위탁 운영 중인 노동복지회관 및</u>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정하려고 하는 것은 행정재산의 이용료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인 이용료 감면의 기준에 해당하므로 조례로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서는 행정재산의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면서, 공유재산법 제27조제6항에서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료 감경 대상으로 "위탁 받은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를 규정하는 것은 어떠한 행사를 의미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나 집행기관이 아닌 위탁 받은 자가 스스로 이용료 감경을 통해 감경 기준을 정하고 이용료 결정에 관여하는 결과가

<u>되므로</u>, 이용료를 조례로 정하고 위탁 받은 자로 하여금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 징수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같은 법의 취지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u>「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u> 제21조제4항에서 행정재산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주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조례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달리 조례입안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 <u>조례입안자는 그 조례제정의</u>목적, 수혜자의 상황, 예산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책적목적에 따라 조례로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용료 감면 요건은 실질적인 집행 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고 이용료 납부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취지, 공공시설의 목적,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u>감면 대상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감면 대상 간 형평에 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u>인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어떠한 행사를 의미하는 것인지 파악하기 어려운바, <u>사용료 감경의 대상은 해석상 논란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u>

이와 관련하여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안」 제11조제2호가목에서부터 다목까지에서 "기업체에서 자사 근로자를 위한 교양교육 및 노동행사" 등의 행사를 사용료 감경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사로서"와 같은 문구를 추가하거나, "근로자의 복지를 위하여"와 같은 문구를 추가하는 등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인바, 이러한 점을 조례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⑧(생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① ~ ③ (생 략)

④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또는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법 제27조 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⑤ ~ ⑥ (생 략)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가맹점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조제3항 등 관련)

[의견20-0163, 인천광역시]

🔲 질의요지

3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가맹점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u>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u>

□ 의견

O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u>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u>으로 보입니다.

이유

○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각주: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 등 참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이라 함)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한 금액이나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각주: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기록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상품권발행자등(각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가맹점을 말하며, 이하같음)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선불카드를 말한다고 정의하면서(제2조제1호), 같은 법 제2조제3호에따른 가맹점을 하려고 하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조제1항).

그런데 지역사랑상품권법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등록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가맹점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등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른 가맹점으로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는 지역사랑상품권법의 제정 과정에서 제출된 법률안 중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에서 운영대행사(각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충전・환전・정산・가맹점 등록・운영 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하는 것으로서(의안번호 제2022138호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2조제2호 참조), 현행 지역사랑상품권 제2조제2호의 판매대행사와 유사한 개념에 해당함)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자를 가맹점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규정안(각주: 의안번호 제2022138호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2조제1항 단서 참조)에 대하여,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른 가맹점은 같은 법에 따라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한 가맹점만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입법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각주: 의안번호 제2018745호고향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제2022138호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제2018727호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2015180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2020, 4, 28,) 참조)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가맹점의 준수사항, 가맹점의 모집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여신전문 금융업법」에서도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을 포함한 가맹점(각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및 같은 조 제5호의2에 따른 수납대행가맹점을 말함)의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위 각 법률에서도 각 법률에 따른 가맹점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제7조제1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 의무를 면제한다거나, 위 각 법률에 따른 가맹점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나아가 지역사랑상품권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비해.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그리고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등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각각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지역사랑상품권법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그 목적을 달리하고 이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제7조제2항), 지역사랑상품권법 제7조에 따른 가맹점 등록의 신청 및 그에 대한 수리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가맹점을 하려는 자 사이의 공법(公法)행위에 따른 공법상 지위의 득실(得失)에 관한 것인데 반해.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가맹점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각주: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함)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각주: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말함)와 사법(私法)상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각주: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20호 및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 각 참조. 더불어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 등을 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8조),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업자, 가맹점모집인, 부가 통신업자,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겸영여신업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제3조, 제16조의3, 제27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가맹점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은 등록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u>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른 가맹점과 「전자</u>금융거래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가맹점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은 그 법적 성격 또한 달리합니다.

더욱이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또는 등록신청의 거부는 같은 가맹점을 하려는 자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가맹점 등록신청의 의사표시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요지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가맹점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른 가맹점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지 여부와 무관히 조례로 일률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서의 지위 및 그에 따른 권리·의무(각주: 지역사랑상품권법 제10조에서는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가맹점의 같은 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제20조에서는 같은 법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를 부여하게 되는 것인바, 이는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를 자유의사에 의하도록한 지역사랑상품권법의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u>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u> 규정하는 것은 지역사랑상품권법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u>할 것이므로, 자치법규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u>

및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환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 2. "판매대행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 3. "가맹점"이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 나.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자(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 3.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④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2. 다음 각 목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 ② 개별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사랑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 제17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업무를 대행한 자
 -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
 - 3. 제10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

- 4.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대행한 환전대행가맹점
- ② 제17조에 따른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2. (생략)
- 3.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기관
 -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다. 「우체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 마.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4. "전자금융업자"라 함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자(금융회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5. ~ 19. (생략)
- 20. "가맹점"이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 21. · 22. (생략)
-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①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전자자금이체업무
 - 2.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 4.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
 -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
 - 가. 특정한 건물 안의 가맹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경우
 - 나. 총발행잔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다.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이용자에게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 2.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업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 ④제3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면제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 제2장(제19조는 제외한다) 및 제3장(제21조 제4항,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3조 및 제25조는 제외한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항·제6항, 제41조제1항, 제43조제2항·제3항,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7조의 전자금융업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소속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지급불능 상태가 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39조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0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 ⑤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37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①가맹점은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이하 "전자화폐등"이라 한다)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가맹점은 이용자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假裝)하는 행위
 - 2.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 3.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 4.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 5.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 ④가맹점이 아닌 자는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8조(가맹점의 모집 등)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영업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미 확인을 한 가맹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가맹점에 떠넘길 수 없다.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그 거래에 대하여 그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분실되거나 도난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
 -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
 - ③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가맹점에 알려야 한다.
 - 1. 가맹점수수료
- 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맹점에 대한 책임
- 3.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가맹점의 준수사항
- ④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가맹점이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받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4. (생략)
- 5. "신용카드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에게 신용카드· 직불(直拂)카드 또는 선불(先拂)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 나.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代行)하는 자(이하 "결제대행업체"라 한다)
- 5의2. "수납대행가맹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별도의 계약에 따라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을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에 필요한 행위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행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

5의3. ~ 20. (생략)

- 제3조(영업의 허가·등록) ①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신용카드업을 할 수 있다.
 - ②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업별(業別)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려는 자로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금융위원회의 인가(認可) 또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2.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하여 경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16조의2(가맹점의 모집 등) ①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1.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 2. 가맹점모집인
- ②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자가 모집할 때 지켜야 할 사항과 모집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건전한 가맹점모집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6조의3(가맹점모집인의 등록 등) ① 부가통신업자는 소속 가맹점모집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맹점모집인이 될 수 없다.
 - 1.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이 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이 법에 따라 가맹점모집인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6.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가운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 ③ 가맹점모집인의 등록요건 및 영업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가맹점모집인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이하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 ②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하여야 한다.
 -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다.
 - 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납대행가맹점의 경우에는 제3호·제5호 (제2조제5호의2에 따라 대행하는 행위에 한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 2.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名義)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 5.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 ⑥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는 신용카드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부가통신업자에게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⑦ 결제대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등에 따른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
-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등이 알 수 있도록 할 것
- 3. 신용카드회원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
- 4. 그 밖에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정보보호 및 건전한 신용카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27조의2(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 등) ①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20억원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자로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 1. 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거나 제27조의3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말소 또는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이었던 자로서 말소되거나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출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
- 3.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4.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자인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한다.
- ⑥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가통신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같은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직(職)을 잃는다.
- ⑦ 부가통신업자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모범납세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지방세기본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품이나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수 없다고 규정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9항에 위배되는지?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9항 관련]

[의견20-0169, 서울특별시 강남구]

□ 질의요지

4

○ 모범납세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세기본법」이나 그 밖의 <u>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품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고</u> 규정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9항에 위배되는지?

□ 의견 및 이유

○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 (각주: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참조),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는 바(각주: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59295 판결 참조)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과세권을 갖고(제4조),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한 것이므로 건전한 납세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모범납세자등에 대한 우대 및 지원 방안을 규정하는 것은 다른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에서는 지방세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를 탈루세액 등의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제1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제2호),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제3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제4호),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제5호)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4호의 위임에 따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서는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를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9항에서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세수 증대에 관련한 금전이나 물품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징수포상금 제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각주: 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4. 1. 시행된「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다목 참조)으로, 해당 규정 신설 당시 리스자동차 등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에 대한 세수확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일정액이상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기업에 대해 징수액의 일정비율을 세입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가사실상 세금감면으로 포상금 지급 취지에 반한다는 논의가 있었던 점(각주: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1616호 일부개정 당시 행정안전위원회검토보고서 참조)을 고려하면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9항은납부의사가 없는 자에 대한 강제징수나 세원(稅源) 추가 확보를 통해실질적으로 세수를 증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지 납부의사가 있는납부자의 정당한 지방세 납부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제7항)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제8항)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8항의 위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구체적 지급대상과 그 지급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강남구조례안"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u>모범납세자</u>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려고 하는 바, 강남구조례안에서는 직전 10년 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직전 8년 간 매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모범납세자로, 직전 3년 간

지방세를 체납하거나 징수유예를 받은 사실이 없고, 직접 1년 간 구세 납부액이 개인의 경우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유공납세자로 규정(제3조)하면서 이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내의 상품권(지역상품권, 온누리상품권, 경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제5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조례안은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제1조)으로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이하 "모범납세자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이 납세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로 보이지는 않고 모범납세자 등은 법령에 따라확정·부과된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모범납세자 등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지방세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에게 우대 및 지원의 의미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 불이행상태에 빠진 자에게 세금납부를 하도록 독려하여 세수 증대에 이바지한 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과는 취지가 다르고 새로운 세원(稅源)을 확보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u>강남구 조례안에 따른 모범납세자등에 대한 상품권 지급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9항에서 금지하고 있는</u>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의 과세권을 갖는다.
-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 4.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② ~ ⑥ (생 략)
- ⑦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과 제5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⑨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① 법 제146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지방재정법」

-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고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선정대상) 이 조례는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이하 "개인 등" 이라 한다)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1. 모범납세자: 매년 1월 1일(이하 "선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 등

- 가. 직전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 나. 직전 8년간 매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였을 것
- 2. 유공납세자: 선정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 등가. 직전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하거나 징수유예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나. 직전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
 - 1) 개인 및 단체 : 1천만원
 - 2) 법인 : 5천만원
- 제5조(우대 및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는 5만원 이내의 상품권 (지역상품권, 온누리상품권, 경품 등)을 지급
 - 2.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우대 및 지원
 - 가.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시기에 표창 및 격려
 - 나. 10만원 이내의 상품권(지역상품권, 온누리상품권, 경품 등)을 지급 다. ~ 사. (생 략)





출처: 국회도서관

1. 국내현황

- 우리나라는 「형법」제9조에서 형사미성년자에 대해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소년법」 제2조와 제4조 제1항을 통해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구분하여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성인과 동일한 범죄행위를 하더라도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년법」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호처분"만이 가능하다. 10세 미만인 자는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물을 수 없다.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은 성인과 동일한 범죄행위를 하더라도 소년법상의 "소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호처분을 받거나 「소년법」제60조에 따라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형 을 받게 된다. 또한 같은 법 제59조에서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이 사형 또는 무기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국외 입법례

① 독일:「소년법원법」

- 독일 「소년법원법」제1조 제2항에서는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과 18세 이상 21세 미만의 초기 성인을 구분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즉 14세 미만의 소년은 절대적 형사미성년자로서 일체의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의 경우에는 제한적 책임능력을 가진 상대적 형사미성년자, 18세 이상 21세 미만은 초기 성인으로 분류하여, 각 개별 사례마다 책임능력을 판단한 후 형사책임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 O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에게는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으로서 교육처분, 교정처분 또는 소년형벌이 부과되며, 이 외에 정신병원수용, 금단(치료)시설수용, 행장감독, 운전면허박탈을 명할 수도 있다.
- O 먼저 교육처분은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준수사항을 부과하거나 제12조에서 의미하는 교육지원을 이용하도록 하는 명령을 의미한다. 교정처분은 경고, 부담명령의 부과, 소년구금으로 구분되는데, 제15조의 부담명령에는 범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력으로 원상회복시킬 것,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 노무를 제공할 것 또는 공익시설에 일정액을 납부할 것이 포함되어 있다.
- O 소년형벌의 경우는 소년이 저지른 범죄행위가 소년의 행위에서 드러나는 유해한 성향으로 인해 위와 같은 교육처분과 교정처분으로는 충분하지 않거나, 책임의 중대성으로 인해 형벌이 필요한 경우 선고되게 된다. 소년형벌은 제18조에 따라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이 원칙이지만, 소년이 저지른 범죄행위가 일반 형법에 따른 법정형 10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할 사건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최장 10년까지로 정해져 있다.
- O 한편, 18세 이상 21세 미만의 초기 성인에게는 제105조, 제106조에 의해

성인이지만 소년에게 적용되는 위의 처분들을 적용하거나, 일반「형법」 상의 규정들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② 프랑스: 「소년범에 관한 1945년 2월 2일 제45-174호 법률명령」

- 프랑스 「형법」제122-8조(미성년자)에서는 "10세 이상 18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선고될 수 있는 교육적 제재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 처할 수 있는 형벌"에 대해 특별법률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 「소년범에 관한 1945년 2월 2일 제45-174호 법률명령」이 이에 해당한다.
- 이 법률명령 제15조-1조에서는 10세에서 18세 사이의 미성년자에게는 교육적 징계처분을 내리고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는 제20-2조부터 제20-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형사상의 책임 경감을 감안하여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13세 이상 미성년자에게는 법정형의 절반을 초과하는 자유형을 선고할 수 없다. 다만 종신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는 13세 이상 미성년자는 20년, 16세 이상인 경우는 30년까지 가능하다. 또한 위소년범에 대한 구금형에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 한편, 제10-3조에서는 16세 이상 18세 사이의 미성년자가 2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전제로 하는 거주지제한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3. 시사점

○ 독일은, 우리나라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에게 보호처분을 하고 있는 것과 달리,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에게는 어떠한 처분도 부과하지 않는 대신 14세 이상 소년범에 대한 제재에 있어서는 "원상회복, 사과, 노무제공 등과 같은 징계처분, 정신병원수용, 금단(치료)시설수용, 행장감독, 운전면허박탈"등 다양한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초기 성인(18세 이상 21세 미만)에 대한 특별규정도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 소년법제와 다른 특이한 점이다.

○ 프랑스는 16세 이상 18세 사이 미성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부과되는 거주제한처분이 있고, 13세 이상 소년범에 부과되는 구금형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